

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(윤준병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8304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4. 14.

발 의 자 : 윤준병 · 안태준 · 허성무
김준혁 · 임호선 · 송옥주
김 현 · 박용갑 · 박홍배
임오경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방사선등의 의학적 이용 및 연구·개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원자력의학원을 설립하고, 국가 방사선 비상진료, 암(癌)병원 등 의학원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현행 국가방사선진료체계는 방사선피폭환자에 대한 응급진료 등 초기 의료대응을 중심으로 구축되어 있을 뿐, 방사선 사고 또는 업무상 피폭으로 인한 방사선 화상 등 상해자에 대하여 진단·치료·재활 및 장기 추적관리를 수행하는 치료체계는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은 한계가 존재함.

실제,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업무상 재해에 대한 일반적인 요양체계이고, 보건복지부의 전문병원 제도 역시 관절·뇌혈관·척추 등 특정 질환과 진료과목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방사선상해를 전문으로 하

는 치료체계가 전무함.

이에 방사선 작업자 및 생활주변방사능에 노출되는 항공 승무원 등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한국원자력의학원 내에 ‘방사선상해 치료병원’을 설립·운영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, ‘방사선상해 치료병원’의 기능을 방사선 사고 및 업무상 재해 상해자에 대한 전문 치료 및 방사선 상해 전문 의료서비스 제공 및 관련 첨단 의료기술 개발 등으로 규정하여 전문 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정립하려는 것임(안 제13조의4제10호 및 제13조의5 신설).

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조의4제10호를 제11호로 하고, 같은 조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0. 제13조의5에 따른 방사선상해 치료병원

제3장의2에 제13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3조의5(방사선상해 치료병원) ① 의학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건강 보호 및 안전관리와 방사선으로 인한 상해 발생시 전문적인 의료기능을 제공하기 위하여 의학원 내에 방사선상해 치료병원을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1. 「원자력안전법」 제2조제21호에 따른 방사선작업종사자
2. 「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」 제18조에 따른 승무원
3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사선상해 치료병원의 의료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

② 방사선상해 치료병원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

1. 방사선 사고 및 업무상 재해로 인한 방사선 상해자에 대한 전문 치료
2. 방사선 상해 전문 의료서비스 제공 및 관련 첨단 의료기술개발

3.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③ 정부는 방사선상해 치료병원의 기능 유지를 위하여 별도의 경비
를 출연할 수 있다.

④ 개인·법인 또는 단체는 해당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원자
력의학원에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3조의4(의학원의 사업) 의학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</p> <p>1. ~ 9. (생 략)</p> <p><u><신 설></u></p> <p>10. (생 략)</p> <p><u><신 설></u></p>	<p>제13조의4(의학원의 사업) ----- ----- ----.</p> <p>1. ~ 9. (현행과 같음)</p> <p>10. <u>제13조의5에 따른 방사선상해 치료병원</u></p> <p>11. (현행 제10호와 같음)</p> <p><u>제13조의5(방사선상해 치료병원)</u></p> <p><u>① 의학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건강 보호 및 안전관리와 방사선으로 인한 상해 발생시 전문적인 의료기능을 제공하기 위하여 의학원 내에 방사선상해 치료병원을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.</u></p> <p>1. 「원자력안전법」 제2조제21호에 따른 방사선작업종사자</p> <p>2. 「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」 제18조에 따른 승무원</p> <p>3. <u>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사선상해 치료병원의 의료서비스 제공이</u></p>

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

② 방사선상해 치료병원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

1. 방사선 사고 및 업무상 재해로 인한 방사선 상해자에 대한 전문 치료

2. 방사선 상해 전문 의료서비스 제공 및 관련 첨단 의료기술개발

3.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③ 정부는 방사선상해 치료병원의 기능 유지를 위하여 별도의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.

④ 개인·법인 또는 단체는 해당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원자력의학원에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.